

改正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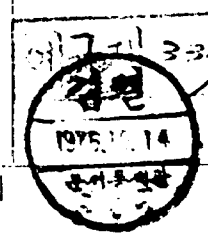
1. ~~既存幾許의 建築物의 概念을 法定 方針과 一致시킴 (70. 6. 20 以前 建物) 包存되도록~~
2. 2回以上 流札財産의 流却促進을 爲하여 随意流却條項을 補充.
3. 年賦財産에 一時拂 拂込의 規定을 導入하여 代金의 早期收廻을 圖謀.
4. 用途指定土地 (市場用地等)의 契約節次를 明文化.
5. 年賦財産의 名義變更節次를 規定.

정권 조항
건설사 함

10/4

관청 } 1975. 11. 14

과장 김...
과장 김...



김영호
김영호

4975

2. 주요개정내역

가. 유찰재산의 권익대각절차 보완	청서
나. 건물채비차 대각절차 보완	
다. 용도변경재산	
라. 채권유부기간 및 순취절차 보완	판인
마. 연부대각재산 일시성부결정제 도입	
바. 명의변경절차 보완	
참. 개경아오지	발송
2. 개경안	
3. 개경대비품	

에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2261264	(전화번호 375)	진결규정 전결사	조항
처리기간	1445 시 상			
시행일자	1044			
보존년한				
보조 기관	제2차시장 회계과장 회계과장	제4차시장 회계과장	제1차시장 회계과장	제3차시장 회계과장
기안책임자	유병돈	조	법무담당관 } 이기인 법제과장 } 김현 회계과장 } 김현 행정과장 } 김현	
경수 합	유신 조	각 안 참 조	발 신	봉 제
제 목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규정개정 제 1 안 (대부결재)			
1. 서울특별시 예규제 318 호로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및 처분규정중 일부를 발령 안과 같이 개정코자 한다.				
2. 주요개정내역				
가. 유찰재산의 권익대추결과 보완				
나. 건물체비지 대추결과 보완				
다. 용도지정재산				
라. 채권유부기간및 순취결과 보완				
마. 연부대각재산 일시상부결공제 보완				
바. 명의변경결과 보완				
첨부 1. 개정안 초안 1부				
2. 개정안 1부				
3. 개정대비표 1부				



청서
판인
발송

제 2 단

주 소 : 공 보 실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체비자 관리 및 처분규정 시보 제41호

1. 서울특별시 체비자 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
하였기 의리하므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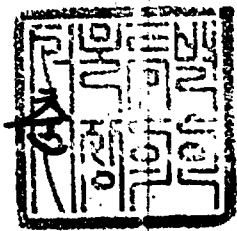
첨부 개령안 / 부 록

서울특별시 채비지 관리 및 처분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제 29 호	1976.10.6	제 29 호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 영구 제 2 호

서울특별시 재매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재매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중 "시유 재산심의회"를 "공유 재산심의회"로 한다.

~~제 8조 제2항 제2호 마름표 5를 마름표 4로 한다.~~

~~5. 부위장마사입지구 내의 토지로서 함포에 있는 기존 부위구간을 갖지 않음
(1976. 6. 20 이전)이 속해 되어 있는 100평 미만의 토지~~

제 9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1조"로 한다.

제 10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 12조 제1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3. 용도가 시장으로 지정된 용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 예정자(이하 "매수자"라 한다)와 먼저 가계약(별지 제37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 시설보증금으로 매각금액의 2할 이상을 관할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은 가계약 체결후 매수자가 법인 등 기부등본 및 시설보증금 납부필증(별지 제38호 서식)과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체결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산업국장(참조 상정국장)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38호 서식)

5. 기타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1. 2회이상 공 매에서 유찰된 토지를 수회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공판대장을 비치하고 수회공판매각시 매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매수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견적서(별지 제34호 서식) 및 견적보증금납부서(견적액

의 1할 이상을 한국상업은행(매경로지점에 예치한 예치금) 전부 제출케한
다. 2인 이상 견주서 제출 자금 예정구좌 이상의 최고액을 견주하는 자에게
매과한다.

제 14조 제1항 제1호중 "12조 2회 3액"을 "제12조 제2항 제3호액"로, 동항 제
4호중 "구항"을 "구호"로, 동조 제2항 제2호중 "전항"을 "제 1호"로, 동조 제3항
제2호중 "전항"을 "제 1호"로, 동항 제2호 다음에 3호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연부로 계약한 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일시로 전액 납부할때
는 일시를 계약에 준하여 2할 중 제한 금액을 매과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전과항의 대금 징수 순위는 연제이자, 이자, 매과대금 순위로 징수한다.

제 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 1항"
으로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구취정미사업의 미 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8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한 토지중 전과항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
의변경 통지가 있을 때
5.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